

제411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월10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가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3)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30)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06)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4)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3)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94)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1)
-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2)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3)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7)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3)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19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0)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11)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8)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63)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41)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2)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4)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21)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5)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8)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00)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6)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10)

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9)
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32)
2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3)
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47)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4)
3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53)
33.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7)
3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0)
3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228)
3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587)
3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2)
3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1)
3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3)

상정된 안건

1. 가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 3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3) 19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30) 19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06) 19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4) 19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3) 19
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94) 19
8.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1) ... 19
9.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2) 19
1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3) 19
11.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7) 19
12.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3) 19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194) 19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0) 19
1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11) 19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8) 20
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63) ... 20
1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41) ... 20
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2) ... 20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4) ... 20
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21) ... 20

2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5) ...	20
2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8) ...	20
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00) ...	20
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6) ...	20
2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10) ...	20
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9) ...	20
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32) ...	20
2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3) ...	20
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47) ...	20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4) ...	20
3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53) ...	20
33.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7) ...	20
3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0) ...	20
3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228) ...	20
3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587) ...	20
3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2) ...	20
3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1) ...	20
3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3) ...	20

(14시20분 개의)

○소위원장 소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모두 3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

○소위원장 소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가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논의될 내용이 가사소송 절차에 대한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는 논의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청회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청회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원칙적으로 언론에 대해 공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공청회가 종료된 후에는 법안 심사가 시작되므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간단히 스케치

만 하고 법안 심사 전에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때 필요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되시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계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아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님이십니다.

○진술인 이경아 안녕하세요? 이경아 변호사입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감사합니다.

이광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님이십니다.

○진술인 이광우 반갑습니다. 이광우 판사입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진술인 이동진 이동진입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고맙습니다.

끝으로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 부장님이십니다.

○진술인 조경애 안녕하십니까?

○소위원장 소병철 진술인들의 자세한 약력 그리고 진술문, 관련 의안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는 먼저 네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진술인과 참석하신 관계자분들께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므로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시간은 각 진술인별로 15분씩 진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에게 말씀을 드리면, 제출하신 진술물이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표시된 타이머를 확인하시면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가급적 15분 안에 발표를 마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경아 변호사님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경아 이경아 변호사입니다.

먼저 진술의 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가사재판절차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가사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이나 비송사건절차법 등을 준용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률 자체만으로는 완결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무엇보다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반면 이번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하 정부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부개정법률안은 위의 주요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책으로서 다수의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정부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가사재판절차의 기본법 내지 통일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안의 특징으로서 가사재판절차의 기본법으로서의 체계적 완결성 확보, 미성년자의 권익 보

호를 도모하는 내용의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이 언급될 수 있는데 저는 소송대리인으로서 당사자의 권익 보장 차원에서 정부안이 가지는 특징을 중심으로 진술하고자 합니다.

제 진술의 근거를 항목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소송대리인의 입장에서 이번 정부안에서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보는 내용은 정부안 제6조입니다.

정부안 제6조는 지방법원은 제1심에 계속되고 있는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 재산 분할청구 또는 상속재산 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사건이 가정법원 제1심에 계속되고 있는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 비송사건과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가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이 해당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됨으로써 사건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하고 합일적인 분쟁 해결이 기대됩니다.

현재까지는 하나의 실질관계에 있는 가사사건과 민사사건 또는 전제성이 있는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럴 경우 한 사건을 추정하고 기일을 정지시키고 다른 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등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부부 중 갑이 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을이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자신이 모두 부담하였음을 이유로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신탁재산으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재산의 유지에 갑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기존에 을은 지방법원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정법원에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서 모두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불경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은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과 달리 지방법원에서 관할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는 구체적 상속분이 침해된 유류분액 산정을 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진행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상대적으로 짧기에 당사자는 일단 소 제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기일을 추정해 두었다가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구체적 상속분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소송불경제가 있었습니다.

정부안 제6조는 이와 같은 현행 실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반영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하고 무엇보다도 사건 당사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혼인관계 소송에서의 관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안 제37조 제2호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등 혼인관계 사건에서 부부 중 한쪽 당사자만이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할 때에는 그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관할이 새롭게 인정됩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에는 이와 같은 관할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예컨대 서울에서 공동으로 생활하였던 부부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와 함께 제주도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재판상 이혼 사건의 관할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될 수밖에 없어 변론 기일 때마다 서울가정법원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 양육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에 따르면 이런 경우 제주지방법원의 관할이 별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자녀 양육 공백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안 37조 4호 가목은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이혼 등 혼인관계 사건

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점을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므로 재판상 이혼 등의 혼인관계 사건에서 피고가 해외에 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원고가 제주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정부안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송절차 공개의 예외 규정에 대해서 살펴겠습니다.

정부안 제30조는 당사자 등이 공개법정에서 진술함으로써 사생활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결정으로 소송절차의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소송절차의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이론상으로는 가사사건의 심리와 판결이 공개되는 게 원칙이어서 실무적으로는 시차제 재판 등을 통해서 사실상 비공개 재판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재판을 진행하면서 언제든지 가족이나 당사자 간 내밀한 사생활이 누구에게든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안 제30조는 가사사건이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될 필요성을 감안해서 비공개 결정의 이유와 그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여 그 실익이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정비에 관한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 제4조에서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을 총체적으로 정비하고 가사사건의 분류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던 점이 정부안의 큰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사건을 가류·나류·다류 사건으로, 가사비송사건은 라류·마류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도 분류 기준 내의 세부적인 사건 목록을 살펴보아야 그 분류의

기준을 비로소 가늠할 수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로서는 가류 사건이나 나류 사건 그런 표현만으로는 그 용어나 기준 자체가 생경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분류 기준에 따라 직권조사 여부나 조정 전치주의 대상 여부 등이 결정되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 이와 같이 분류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률 자체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가사소송사건을 가족관계사건·재산관계사건으로,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이 없는 경우와 상대방이 있는 경우로 분류해서 그에 해당하는 사건을 민법의 조문 순 등으로 별표로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은 물론이고 의뢰인도 사건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향후의 진행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실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규정입니다.

이번 정부안 특징 중 하나로 파악되는 것은 무엇보다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히 목적 규정 자체에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규정함과 아울러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선임 규정의 신설,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의 원칙적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이는 가사재판이 미성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설된 것으로서 소송대리인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안 16조의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선임 규정과 관련해서 여기에서의 절차보조인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여야 되는지,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보조인 선임 방안에 관해서는 추후 운영에 대해서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안 16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가사사건에서 절차보조인이 선임될 수 있는데 절차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 미성년자의 나이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리학이나 교육학 등 분야의 전문가도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절차보조인의 기본적인 역할은 대화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미성년자의 의사 및 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가정법원에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것, 재판절차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자와 동석하거나 그의 진술을 보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차보조인의 역할이 의사소통의 중개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인정되고 있는 그런 진술조력인과 같이 변호사보다는 아동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어찌 보면 이는 현행 가사소송법이나 정부안으로 정하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 조회나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여 이와 중첩적인 내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안의 본래의 입법취지가 미성년자 관련 가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과 조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 중점을 둔다면 되도록 절차보조인은 정부안이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변호사로 선임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 절차보조인 변호사가 가사조사관과 업무 협력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는 방식 등을 고민해서 미성년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그의 복리를 위한 방향의 조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소송계속의 의무적 통지제도 도입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기존 가사소송법은 가사비송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참가 신청을 하여 참가하거나 법원이 참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었습니다. 이에 위에 정한 가사소송절차에서 검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가족관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그 재판 결과로 신분 및 재산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부안은 가사소송 재판 결과로 인하여 신분 및 재산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계속을 통지해 주는 의무적 통지제도를 도입하여 이해관계인의 소송절차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소송

대리인의 입장에서 가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왔습니다. 모쪼록 이번 기회에는 정 부안대로 가사소송법이 개정돼서 기본법으로서의 가사소송법이 체계적 완결성을 갖추게 되고 미성 년자의 복리 강화, 국민의 편익과 복지를 증진하 기 위한 법률로 작용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이경아 변호사님, 시간도 지 켜 주시고 내용도 소송대리인으로서의 경험까지 녹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우 부장판사님 진술하시기 바랍니 다.

○진술인 이광우 서울가정법원 이광우 판사입니 다.

오랫동안 가사소송법 개정을 기다려 온 실무가 의 입장에서 오늘 가사소송법 개정 공청회가 개 최되고 진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병철 소위원장님과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공청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자료에 따라서 가사소송법 개정의 필요 성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0년 12월 제정돼서 1991 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 제정 이후 32년 이 흐르는 동안 민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가정법원 관장 사항 이 확대되었지만 아직 전면적인 개정은 이루어지 지 않았습니다.

가사소송법의 전부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사재판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유의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혼과 자녀 양육 등 가사사건과 관련 된 국민의 인식과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가사재 판절차에서 국민의 권리 보장,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의 확대 설치에 따른 법원의 후견·복지 기능을 뒷받침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사소송법 전면 재정비의 필요성이 지 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과 법무부 의 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 률안이 21대 국회에 제출된 것에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말씀드린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함 께 이번 법률안에서 그 내용들이 어떻게 구현되 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사재판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유의 기본법 마련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의 완결성을 갖추지 못하고 직접 규정하지 않은 사항 중에 가 사소송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가사비송 절차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고 있 어서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가 있습니다.

가사비송사건은 가정법원이 후견·복지 조치를 취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직권으로 개입하 는 특수한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나 실질적인 반 대당사자가 있는 사건이 존재해서 단순히 민사비 송사건을 규율하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서 사건 유형별 절차를 직접 규정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이 개별 사건의 재판 절차나 관할, 불복방법 등 절차적 기본권과 직결 되는 사항을 쉽게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개선 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사소송법은 절차의 상당 부분을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가사소송 법의 조문은 73개인 반면에 하위법령인 가사소송 규칙은 그보다 많은 138개입니다. 이는 입법 소 요가 있을 때마다 법률 개정이 아닌 대법원규칙 개정의 형식을 통하거나 법원이 후견 기능을 확대하며 시행한 제도와 실무를 정착시키고 정비하 는 과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규범화한 것에 원인 이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불균 형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절차적 기 본권 보장의 차원에서도 법률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하위법령인 대법원규칙에 규정 되어 있다는 점에서 체계상 혼선을 야기하고 있 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사소송법 의 체계를 개편해서 사건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하 고 다른 법률을 준용하기보다 사건 유형별로 구 체적인 절차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법률사항과 규칙사항을 개편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 다고 할 것입니다.

가사사건의 재분류 등 이와 관련된 주요 개정 사항은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의식과 사회 변화, 가사재판 절차에서의 국민 권리 보장, 편익 증진의 측면에서 가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가사소송법 제정 이후인 1991년 유엔아동권리 협약 가입을 계기로 아동의 인권보호에 관한 의식이 점차 높아지게 되었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의 결과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미성년자가 사건 본인이거나 당사자인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진술 청취,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친권상실청구 허용 등 가사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를 위한 권리와 절차의 강화 그리고 양육비 지급, 유아 인도 등의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을 중시하는 새로운 후견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되고 의사 능력에 흠결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변화가 이어지면서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가족관계 관련 가사소송사건이나 신분적 권리와 관련한 가사비송사건에서 의사 능력이 있으면 소송행위나 비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밖에 소송 결과에 따라 신분과 재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이해관계인에 대한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소송 경제 측면에서 당사자의 편익을 증진하거나 실무상 필요함에도 규정이 없어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각종 제도들 역시 가사소송법에 직접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제도의 시행, 특정 유형 사건에 대한 소송행위 또는 비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규정 등은 현행 가사소송법에 없는 내용을 여러 항목에 추가, 변경하는 것이므로 전면 개정을 통해 체계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의견 청취와 절차보조인 제도,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 등 주요 개정사항은 32쪽과 33쪽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된 사전처분의 집행력 부여에 관한 사항은 33쪽 중단에 기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사항을 통하여 가사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충하는 한편 미

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강화하고 가사사건의 당사자는 물론 이해관계인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실무상 필요한 각종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사재판절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의 확대 설치에 따른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측면에서 가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가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전국에 가정법원이 한 곳뿐이었지만 현재는 여덟 곳의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기능에 대한 대외적인 요구와 기대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건의 심리 중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을 권고하거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등 당사자와 사건본인을 대상으로 각종 후견·복지적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가사소송법은 이에 대한 절차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판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후견·복지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재판장이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생활환경, 관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지원, 각종 외부 기관의 프로그램이나 상담 연계와 같이 당사자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원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사재판절차에서 가정법원이 당사자나 사건본인 등의 생활환경이나 관계 개선을 위한 후견·복지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정법원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고 전국적으로 균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2013년부터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이 추진되어 왔고 21대 국회에 제출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이루어진 여러 논의의 결과를 담고 있

습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족 간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다루는 절차법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법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돼서 국민들이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편리하고 선진화된 가사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이광우 부장판사님 감사합니다.

법 개정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조목조목 필요 조항들을 언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진 교수님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동진 서울대학교 이동진 교수입니다.

준비한 진술서에 따라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소송법은 1990년 12월 31일 구 인사소송법에 갈음하여 제정된 이래 지난 23년간 전면 개정 없이 그 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사이에 가사소송법에 대응하는 실체법인 민법 친족·상속편은 열두 차례나 개정되었습니다. 이혼법, 친자법, 성년후견법, 상속의 승인·포기에 관한 개정 중에는 상당히 큰 폭의 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례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가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가정법원은 이른바 후견법원으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정착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행 가사소송법은 누적된 실체법과 재판 실무의 변화를 반영하고 향후의 발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지 오래입니다. 이에 법원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 2월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2년간의 준비 끝에 건의안을 마련하였고 법무부는 이를 기초로 검토와 수정을 거쳐 2016년 9월에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18년 3월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회기에 제출된 안을 기초로 다시 수정, 보완을 거친 것으로서 10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완성도가 높은 개정안입니다. 진술인은 이 개정안이 어떤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그 필요성에 관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소임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행 가사소송법 또는 가정법원 실무를 내용상 그대로 이어받는 것,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거나 불분명했던 문제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 현 상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 이하에서는 이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조문의 대다수는 현행 가사소송법 또는 가정법원 실무를 내용상 그대로 이어받고 별다른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 이래 장기간에 걸쳐 여러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추가돼서 모법보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가사소송규칙의 내용 중에서 기본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가사소송법으로 끌어올린 부분, 종래의 가·나·다류 가사소송과 라·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구분을 실질적으로는 유지하면서도 가족관계·재산관계, 상대방 있는, 상대방 없는 사건으로 다시 이름하거나 준용 방식으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일일이 풀어쓰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부적절하게 있던 규정을 정리하는 등 일람성을 높인 부분, 당사자나 관계인의 생활환경,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에 연계하거나 각종 프로그램, 상담에 연계하는 등 가정법원이 이른바 후견적 기능,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온 데 대한 법률적 기초를 확보하는 부분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 개정은 혼란의 우려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께서 더 알기 쉬운 법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 나아가 장기간 그 틀을 유지할 수 있을 기본법으로서의 품위도 갖추고 있습니다.

진술인으로서의 일종의 서비스 기관으로서 가정법원의 모습을 법률 수준에서 드러내는 부분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현대화된 개정안이 우리 입법의 국제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근래 들어서는 다른 나라의 법률가나 법학자가 우리나라의 입법 동향을 거의 실시간으로 진지하게 소개하고 참조하는 일을 종종 보는데 진술인은 이 개정안 또한 그러한 예가 되리라고 전망합니다.

다음,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는 현행법의 기초는 유지하되 현실화하거나 현행 가사소송법의 해석·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불명확성 내지 모순을 정리하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한 부분이 앞의 예라면 당사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지 않은 사항의 재판도 조정 전치주의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정리한 부분, 실무상 행해지고는 있었지만 허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청구포기나 화해를 재판상 이혼과 재판상 파양, 상대방 있는 비송사건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정리한 부분은 뒤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또한 실무를 반영한 것으로서 혼란을 초래할 우려는 없고 오히려 그동안 있었던 다소간의 혼란을 해소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경제 사정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몇 가지 중요한 실질적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여러 곳에 나뉘어 있습니다만 이를 정리하면 네 범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가사절차상 미성년자의 권리 및 복리 고려 강화, 둘째 재산관계가 아닌 가족관계 가사사건에서 절차 능력의 확대, 셋째 유류분, 부부 간 및 상속재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등 관련 민사사건의 가정법원 이송, 넷째 가사재판 집행의 강화가 그것입니다. 앞의 둘은 이념적·원리적으로 중요한 선진화에 해당하고 뒤의 둘은 장기간 인식되어 온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첫째,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를 광범위하게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며 관할과 관련하여서도 부부 일방과 미성년 자녀가 동거하는 경우 그곳을 우선하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절차 중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내는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1991년에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던 바고 다른 나라의 선진 입법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실현된 바기도 합니다. 이 개정이 관철되는 경우 장기적으

로 가사재판에서 미성년자의 절차적 지위가 강화되고 그 의견을 더 진지하게 고려하는 실질적 변화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소송 능력과 비송 능력에 관하여 별개의 규정을 마련하여 역시 재산관계가 아닌 가족관계 가사사건에서는 미성년자나 피후견인도 상당한 범위에서 단독으로 재판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신상에 관한 사항에서 피후견인의 자율성 존중은 오늘날 국제기구와 다른 선진 입법의 전반적인 흐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여러 입법에 반영되어 있는 바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재판절차에서도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 가족관계 가사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정안은 자율성 확대에 의한 위험을 섬세하게 배려하고 있고 절차보조인 제도도 여기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 역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 늦은 것은 아닐지언정 온건하고 안전한 개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유류분 반환청구와 부부 간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등의 사건에 필요한 경우 민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래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이 민사법원에서 재판되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등 여러 가사사건과 병합될 방법이 없고 그 결과 필요한 고려나 조정이 이루어질 방법이 없다는 비판, 부부 간 명의신탁이나 상속재산 관련 명의신탁 해지가 현실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상속재산 분할과 얽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관할이 분리되어 한쪽이 다른 쪽 재판을 기다림으로써 생기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예전부터 실무계와 학계에서 제안해 온 것으로 별 반대가 없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넷째,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가사재판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에 원칙적으로 집행력이 없던 것을 집행력을 인정하였고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였던 자녀 인도청구를 일정한 요건하에 미성년 자녀로 명확히 하였으며 종래 정기금 형태의 양육비를 3기 이상 불이행하여야 했던 감치를 정기금, 일시금을 묻지 않고 30일 이상 불이행하면 가능하도

록 바꾸었습니다.

사전처분은 가사재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임시 처분으로 집행력 확보가 절실했고 그동안 누적된 재판 실무에 비추어 볼 때 집행력을 부여하는 데 어떤 위험이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 인도는 실무상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 너무 쉽게 집행이 좌절되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뉴스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는 문제로서 해결을 위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양육비 집행의 가장 강력한 집행수단인 감치재판에 이르는 데까지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궁핍한 양육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 또한 현장에서, 언론에서 반복하여 지적되어 온 바입니다.

가사재판의 집행력 강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과제입니다. 개정안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현안으로 인식되어 온 위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응의 방식과 정도 또한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은 아니나 전반적으로 여전히 온건한 수준으로서 진술인으로서 매우 건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가사사건 기록열람의 제한 및 절차 진행의 비공개 등을 명확히 하고 공익적 필요가 있는 일정 사안에 한하여 취하를 제한한 것 또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적절한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전체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마련된 완성도 높은 법률로서 가사재판에서 미성년자 등의 권익을 강화하고 가사재판의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며 그 사이 실무계와 학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바를 참조하여 몇몇 쟁점을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한 불필요한 변화를 피하고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 확인된 해결을 택하면서도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훨씬 쉽고 품위 있는 법률로서 국제적으로도 내놓을 만한 성과물입니다.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본법의 전면개정인 만큼 또다시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정해 이르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회기 중에 꼭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 교수님, 국회의원들이 들을 때 아주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꼭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아주 실감 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조경애 저는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등 이행확보 방안의 강화 필요성에 관해서 제출드린 진술서를 축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미성년 자녀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이 저해되어 생존권까지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과 성장의 필수적인 재원이므로 국가는 양육비가 잘 지급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을 강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지급 실태를 보면 한부모가정의 미성년 자녀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양육비 이행의 지속률은 50.5%에 그쳐 열악한 양육 환경에 처한 미성년 자녀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특히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등 이행확보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한 것이 주목됩니다.

개정안에서는 사전적 이행확보 강화를 위해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또 감치명령의 신청요건이 되는 양육비 미지급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보다 신속한 양육비 확보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전처분의 집행력 인정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나 미성년 자녀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전처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예를 들면 소 제기가 있을 때 임시 양육자 지정과 일정 기간 양육비 지급 결정 등 가정 내 약자 보호를 위한 예방적이고 후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현행 가사소송법 제62조제5항에서는 사전처분의 집행력을 명문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연혁적으로 입법상의 판단 오류에 따른 입법 불비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의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더 이상의 제재가 어렵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간접적인 제재이므로 권리자에게 필요한 양육비가 직접적으로 회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담현장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현실은 그대로라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직접적으로 양육비 지급 강제가 가능하도록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실무와 학계에서도 장기간 소요되는 가사사건의 특성상 원활한 심리와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을 위해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전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행력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처분의 이행확보를 위한 가사소송법상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여 사전처분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와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행명령의 경우 가정법원은 사전처분의 내용이 양육비 또는 부양료의 지급의무, 미성년 자녀의 인도의무, 미성년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위반 시 감치명령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사전처분의 기한, 집행력을 확보하여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처분을 취소 혹은 변경할 수 있는 사전처분 취소·변경 제도를 신설하고 당사자에게 불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즉시항고 규정도 정비하여 체계의 균형을 갖추었습니다. 사전처분은 그 집행력이 확보되어야 가정 내 약자나 미성년자의 복리를 실효성 있게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양육비 등 다양한 이행확보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치명령 요건 완화의 필요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치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에 준하는 효과가 있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조사를 보면 한부모들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시급한 제도로서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와 함께 미이행자 처벌 강화를 답하여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는 감치신청을 했더니 비로소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 개정 필요성을 보면 먼저 감치는 이행명령 이후 양육비 미지급이 3기 이상 되어야 신청 가능하여 긴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 사례를 보면 이행명령 신청과 결정 이후 3기 이상 기다려 감치 신청하고 결정받기까지 평균 1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감치 신청까지 이미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도 양육비는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자들은 양육비 공백에 대한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또 채무자가 감치를 피하기 위해 3기째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끊어 버려 이행명령부터 다시 신청을 반복하는 사례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양육비 특성으로 인해 법원이 3기 이상을 분할지급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감치명령이 불가능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명령결정 후 3기 이상의 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한 감치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소리입니다.

한편 감치명령 이후 제재수단의 한계와 관련하여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다 강력한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인 운전면허정지 처분,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수단은 감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적용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제도들을 활용하려면 오랜 시간을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 제도가 원활하게 이용되려면 현행법상 감치요건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육비 일시금 지

급명령 위반의 경우에 부양료 또는 양육비의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훨씬 단축된 기간 안에 감치 명령 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와 보다 빠른 양육비의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제145조에서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조항을 신설하여 인도의 대상을 유아에서 미성년 자녀로 확대하고 미성년자의 진술청취권 보장과 인도집행 시의 유의사항을 규정하는 등 미성년 자녀 보호를 보다 두텁게 보장한 특징도 있습니다.

상당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양육자들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에 더하여 양육비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의 복리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는 몇 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육자가 양육비를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지급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이 끝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은 양육자에게 큰 좌절을 줍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안에서는 제140조제5항에서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제151조제1항제2호에서 30일 이내에 양육비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감치가 가능함을 명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이 미성년 자녀의 생계와 복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양육비 등의 이행확보 방안을 강화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으로 고통받는 미성년 자녀와 한부모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확보 방안이 가사소송법에서 잘 구현되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조경애 부장님, 아주 상세하게 또 실무상담에서 느끼신 바에 대한 부분까지 가미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 도움이 됐습

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질의 답변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이경아 변호사님!

○진술인 이경아 예.

○유상범 위원 다른 진술인도 마찬가지로 절대보조인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통상 절차보조인이라는 개념은 사실 행위에 대한 보조행위를 의미하는데 법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단순 사실행위의 지원이 아니라 미성년자가 제대로 된 의사표현이 안 되는 경우에 필요한 진술의 명확한 표현 또 지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절차보조인이라는 생경한 개념보다는 지금 현재 청소년 관련법에 보면 진술조력인 제도를 우리가 많이 채택해서 쓰고 있고, 그와 같은 형태로 굳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진술조력인 제도를 활용한다면 이 제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진술인 이경아 기존의 다른 법률에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는 사실상 그 절차 내에서 단순히 진술을 보조하고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런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정부안에서는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적인 지원과 조력이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진술조력인보다는 오히려 법률적인 조력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술조력인이라는 그전의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새로운 절차보조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률적 조력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표현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범 위원 이동진 교수님!

○진술인 이동진 예.

○유상범 위원 다른 부분, 즉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 그다음에 가정법원의 후견인 지위·역할의 강화 이런 부분은 다 동의가 되는데 위낙 이 개념은, 사실 처음 가사소송에서 절차보조인 개념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소송절차상에서의 미성년자 보호규정이잖아요.

그 이외 절차보조인이 다른 데까지 관여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 절차보조인 개념을 진술조력인의 형태, 기존에 우리가 활용했던, 이미 우리 사법 시스템에 와 있는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어떤가 의견 한번 다시 같이 물어봅니다.

○진술인 이동진 일단은 절차보조인 개념은 가사소송법에는 처음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만 미성년자나 정신장애인들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서, 지금 이 개념을 쓰는 법안들이 몇 개가 이미 있습니다. 대부분 개념은 비슷한데 미성년자나 정신장애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절차중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 주려다 보니까 도와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걸 규정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가사사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가지 경우는 미성년자나 정신장애인 같은 분들이 사건본인이 돼서 절차에서 절차법상 뭔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상황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상황은 이 개정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미성년자나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런데 이 독자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줄 때에는 어쨌든 법률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 이 개념이 이쪽에서는 대리를 하지 않고 본인이 하게 하면서 옆에서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보통 설명을 하고요. 그런 개념을 쓸 때 절차보조인을 쓰는 거여서 두 경우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절차보조인 지명 절차가 필요하고 그것에 관련된 별도 예산도 필요하고 이런 규정들이 많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토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기본법에는.

○진술인 이동진 저는 예산 부분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예산추계가 여기 있는 것으로 봤고요. 보통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외국의 예를 보면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돈이 들지 않는, 믿을 만한 가까운 사람을 절차보조인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실무적으로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유상범 위원 이광우 부장님, 한번 마무리해 주시지요, 그 부분.

이 부분이 결국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서 우리가 입법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입법화할지에 대한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술인 이광우 실무상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년후견 사건에서 치매노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본인의 법률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나 법률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보조인의 측면보다도 조금 더 법률적으로 미성년자의 입장에서 그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제도로서 효용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절차보조인이 필요한 사건을 모든 사건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단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지만 어쨌든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유상범 위원 제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변호사의 성실의무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관계되는데 실제로 이 역할이 어떤 경우에는 의미가 있지만 만일 성실의무에 충실하지 않다면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결국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이 보니까 미성년자의 직접소송절차를 강화하면서 충분치 않은 의사결정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들어왔는데 만일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일반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상당히 정착이 됐잖아요. 그것 정도가 안 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도 언뜻 보이거든요, 이 부분요. 어떠신가요, 이 부장님?

○진술인 이광우 제가 생각하기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성년후견의 경우에 성년후견의 전문가후견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미리 전문가후견인 풀을 만들어 두는데요. 그 과정에서 엄격한 스크린을 거치고 있고요.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보조인의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법원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사전에 변호사

를 상대로 일종의 신청을 받아서 풀을 구성하고 거기서 케이스별로 변호사에게 할당을 해서 사건을 지원하게 하고 진술조력인이나 이 정도 되는 정도에 준하는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요.

이것은 이 부장판사님께서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신 건가요?

○**진술인 이광우**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아까 예를 들어 드린 성년후견 같은 경우는 제가 실무를 직접 담당을 해 봤는데요,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이탄희 위원님.

○**이탄희 위원** 이어서 관련된 거여서 죽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진 교수님, 아까 다른 법에도 지금 절차보조인들 규정이 좀 있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법들에서도 절차보조인 자격이 변호사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됩니까? 어떤가요?

○**진술인 이동진** 제가 법안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법률이 통과됐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법에서는 변호사로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탄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법안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 의견이 있으신가요?

○**진술인 이동진** 저는 이 법안의 문언은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문언을 쓸 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시나리오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사표현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절차능력을 가지고 직접 활동하는 경우일 것이고요. 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전문가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하나는 사건본인에 대해서 본인하고 이 사건 절차를 주도하시는 분 사이에 잠재적인 이해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일 겁니다. 그런데 후자의 사안 유형에서는 본인이 의사표현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의사표현 능력이 있다면 변호사가 오는 게 맥락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일단 말을 표현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취지를 생각해 보면 실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형태의 어떤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만든 조문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탄희 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조경애 부장님은 의견 있으세요? 변호사 자격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를 예외적으로 하는 것을?

○**진술인 조경애** 제가 2014년도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을 당시에는 이것이 변호사 중점으로 설계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변호사를 포함해서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동전문가라든지 실질적으로 상담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자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가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설계가 된 것 같은데 아마 개정 과정에서 좀 더 변호사 쪽으로 포커스가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탄희 위원** 아님, 그런데 의견이 어떠시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진술인 조경애** 그래서 저는 변호사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이 이 풀에 들어와서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조력을 해 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탄희 위원** 이광우 부장판사님, 혹시 의견 어떠세요?

○**진술인 이광우** 저도 이동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실제 실무에서는 아마 그 사안에 가장 적합한 보조인을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을 구성한다고 하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에 계신 분들도 구성을 해서 해당 사안에서 미성년자에게 어떤 조력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그런 아동 관련 전문가가 선임되거나 그렇게 사안마다 다르게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탄희 위원**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원칙, 예외를 이렇게 규정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변호사를 굳이 원칙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진술인 이광우** 다만 아무래도 성안을 할 때는

그게 고려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가 대부분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법률적으로 이해에 상반되는 경우가 다수일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법률가의 조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게 고려된 것 같습니다.

○이탄희 위원 알겠습니다. 실무에서 운영을 잘해 주시면 아무 문제는 없겠지만 입법부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전문가의 소양이라고 하는 것이 미성년자와의 의사소통 문제라든가 미성년자의 특수한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양하고는 별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 가지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다른 소양을 반드시 같이 동반해서 가지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또 심각하게 불일치할 수도 있는 거라서 저희가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신경이 쓰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잠깐 후견인 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후견인 풀 운영은 가정법원에서 되고 있는 거지요?

○진술인 이광우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탄희 위원 보통 후견인들 한 명이 몇 건 정도 하나요? 자기가 풀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1년에……

○진술인 이광우 그게 한 분이 몇 건을 담당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사실 그 풀 중에 사건이 없는 분도 있고요, 두세 건을 담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전문가후견인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보수는 사건본인의 재산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경우에 전문가후견인을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는 없지만 사실상 국선후견인 제도를 시범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한적인 경우 외에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후견인 선임할 수 없어서…… 전문가후견인이 선임되는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유사한 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전문심리위원도 있었고 국선변호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풀로 운영이 되는데 그 풀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풀을 양질의 풀을 확보한 다음에 다수의 사건을 몰아줘서 그분 스스로도 경험을 쌓고 그래서 법

원에서도 좀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풀에는 좀 많이 넣어 준 다음에 사실상 사건을 거의 안 주거나 아니면 한쪽에 다 몰아주거나 이렇게 해서 소양의 어떤 질이라는 게 담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따로 교육을 시키는데 그 효과는 미미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실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변호사 원칙으로 간다고 하면 변호사 풀을 가지게 될 거고 그 변호사들한테 아동에 관련된 또 심리와 관련된 소양을 얼마나 우리가 담지시킬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될 텐데, 그때 풀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한 사람당 몇 건씩 주는지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는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운영하는 데도 관여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이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권 위원님 하십시오.

○박용진 위원 저도 절차보조인과 관련된 우려, 의견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딱 변호사 자격으로 먼저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실제 구성될 때 이쪽에 확 힘이 쏠리지 않을까. 물론 여기 법문이나 아까 말씀하신 진술인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주시는데 이 법문으로 봐서는 자격과 소양의 어떤 관계에서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이 판사님, 가정법원에 가사조정관 제도가 있지요?

○진술인 이광우 예.

○박용진 위원 그분들, 지금 시행된 지 한 20년 조금 안 된 거지요?

○진술인 이광우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런가요?

○진술인 이광우 예.

○박용진 위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처음에 주로 이혼 관련해서 양측의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처음에 뽑고 선발하고 할 때 그분들이 관련된 분야의 학사나 석사 자격

들이 있으신, 심리학이라든지 여성학이라든지 사회복지학이라든지 이쪽이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변호사와 관련된 자격이 아니라 얼마나 서로의 이야기들을 잘 듣고 상담하느냐의 문제인데 실제 절차보조인과 관련된 미성년자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잘, 그러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아동학 등의 이런 쪽의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문이 조금 변경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관련해서 혹시 이광우 진술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술인 이광우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예전에 이 논의 과정에서 호주의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거기도 변호사를 기준으로 하고, 다만 변호사가 아동과 관련된 특정한 교육을 이수했다거나 자격을 갖는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후견 예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문가후견인 풀에 있는 변호사 중에는 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안에 따라서 후견인의 직역도 결정되기 때문에 변호사만 후견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나 그런 사회복지 쪽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후견인으로 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보조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사안에 따라서 그 사건 본인에게 어떤 조력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렇게 선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용진 위원 우려는 남습니다만 호주의 경우라고 그러면 앤드(and)잖아요. 변호사 자격도 있고 이런 소양도 갖추신 분으로 한다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 버리면 조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법적 절차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조력을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 보면 아무래도 변호사 쪽으로 더 많이 이야기들을,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조문을 어떻게 변경시킬지 이 부분과 관련된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고민이나

진술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경애 진술인께 하나 좀 질의를 드릴게요.

국정감사에서도 아동 인도청구와 관련된 집행 실효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동진 교수님의 진술문에도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아동 인도 결정이 제대로 집행되지가 않잖아요, 판결이 내려져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한 뒤에 대법원에서 예규를 변경시켜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이런 변화는, 개선 지점은 있습니다만 가정법원 결정의 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개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근거 규정만으로는, 부족한 집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 인도와 관련해서요.

○진술인 조경애 아동 인도요?

○박용진 위원 예, 혹시 그 부분과 관련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인 조경애 아동 인도와 관련해서는 종전에 너무 이렇게 산발적으로 조문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박용진 위원 예.

○진술인 조경애 일단 가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이것을 좀 정돈을 해서 한 군데로 모으고 또 가정법원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걸로 했는데 구체적인 그런 집행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조금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 담아 넣기에는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상당히 힘이 들 것이고, 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규나 규칙이나 그다음에 영에서도 다시 또 그것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방법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아마 대원칙은 일단 소송법에서는 올려 놓으신 거고요.

○소위원장 소병철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철승 위원님.

○권철승 위원 권철승입니다.

이광우 판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 감치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진술인 이광우 예.

○권철승 위원 이거 감치하면 의무 이행이 어느 정도로 잘 됩니까?

○진술인 이광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 법정에 출석을 해서 감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이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바로 감치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권철승 위원 아니요. 감치가 이행되는 게 아니고……

○진술인 이광우 아니요, 그러니까 감치명령을 해서 감치가 집행이 되면 의무자가 바로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양육비를 지급한다든지 곧바로 집행이 되는데, 양육비 이행이 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더 많은 사건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로 감치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감치 집행은 경찰이 하는데 실제로 집행되는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실행의 문제네요?

○진술인 이광우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개정안에서 의미 있는 것은 감치재판절차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감치명령이 있을 때 감치의 집행에 이르는 그 부분은 여기서는 해결을 못 하고 경찰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면 문서로 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에 있어서는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법을 고쳐 봐도?

○진술인 이광우 그런데 그 전에 이 이행명령이나 감치재판에 들어간 단계에서 또 이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면 조경애 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행 확보 강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행강제금이나 간접강제금 방식 비슷한 걸 도입해서 의무를 이행을 안 하면 계속 그 의무 금액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은 도입하면 어떤가요?

○진술인 조경애 그것도 새로운 방안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술문에 정리를 해 놓았듯이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과태료 자체가 국가에 돈이 가는 거잖아요. 국가에 돈이 가는 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 미우

니까, 너 싫으니까 돈은 그냥 국가에 내고 말겠다. 양육비는 나 못 줘’ 그러면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육비가 필요한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인데 양육비가 손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아니요, 그건 좀 다를 수가 있죠. 이것은 계속 횡수가 거듭되면 본인이 그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많아진 상태에서 만약에 실제로 감치 집행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을 다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진술인 조경애 그렇지요. 1000만 원이든 5000만 원 이렇게까지 가면……

○권철승 위원 그러면 훨씬 효과 있는 방법인데요. 저는 그렇게 안 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걸 질문을 드려 보려고 한 거였거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모양이지요, 그렇게 규정하는 게?

○진술인 조경애 저희가 조문을 그렇게 구성을 하면 되는 거겠지요.

○권철승 위원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 아닌가요?

○진술인 조경애 당장은 이 사람들이…… 보통 양육비 청구하는데 사람들이 한 이삼 년 고민하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돈이 한 달, 두 달, 빨리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과태료가 올라갈 때까지 이 사람이 막 버티면 그 사람은 억지로 빌려서라도 돈은 내겠지만 이 양육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은 크게 변하지가 않잖아요.

○권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사람들에게 대한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니까, 모든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경우에는 계속 돈을 더 내도록, 그게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이든 간접강제금이든 잘 모르겠는데요.

○진술인 조경애 그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권철승 위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 부담해야 될 금액을 훨씬 더 늘어나게 하고 나중에 감치를 명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주 피곤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몰아가는 게 훨씬 좋은 방법 아닌가요?

○진술인 조경애 예, 그것도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권철승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대법원에 서도 나와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송오섭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법안 3조(사생활 보호의 원칙)에 보면 법관, 법원공무원, 그 밖에 직무상 지위로 인하여 사건에 관여하는 사람은 비밀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 법안에는 보면 검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규정상 있지요? 그래서 법관, 공무원, 검사까지는 표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한번 그 의견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답을 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또 하나는 뒤에 155조(비밀누설죄)에 보면 조정위원이거나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정위원이거나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합의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누설하면 100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요즘 아시다시피 가사사건에서 조정되는 상속이나 분쟁의 금액이 때로는 엄청난 금액인데 이 100만 원 가지고 과연 징벌적인 또는 견제 효과가 있겠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의문을 드리니까요 나중에, 어차피 오늘은 공청회 하고 또 심사 과정이 있을 때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송오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매우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우리 소위원회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심사 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과 배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을 준비해 왔던 법안이기에 때문에 저희 소위원회도 위원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법안에 대한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마치고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에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소병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3)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30)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06)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4)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3)

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94)

8.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1)

9.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2)

1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3)

11.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7)

12.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3)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194)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0)

1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11)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8)
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63)
1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41)
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2)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4)
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21)
2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5)
2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8)
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00)
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6)
2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10)
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9)
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32)
2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3)
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47)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4)

3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53)
33.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7)
3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0)
3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228)
3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587)
3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2)
3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1)
3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3)

○소위원장 소병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9항까지 38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노공 법무부차관님,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우영택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님,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실무진의 질의응답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건보공단 관계자분도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실무에 대한 질의응답이 필요하실 시 말씀해 주시면 호명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되는 순서에 따라 배석자분들은 정부위원석에 나와 주시고 속기록 반영을 위해서 발언 시 성명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동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저희 소위 심사에서는 직무 범위를 의료용 마약류 관련 범죄로 한정하되 지명 대상자에 식약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

체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노공 법무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 소속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 범죄에 대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이견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강병원 의원안의 경우 식약처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게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비의료용 마약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 단속의 현장성이나 범리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인력도 부족하고 또 순환 보직으로 장기간 근무가 어려운 또 전문성을 축적하기도 좀 어려운 지자체 공무원에게까지 마약류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 시기상조가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정점식 위원 7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의약품 분야 특사경 현황’ 해서 서울은 8명 정도 있고 경기도가 16명 정도인데 지금 현재 의약품 분야에 대한 특사경이 이렇게 많이 지정되지 않은, 지명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구분하면 광역단체도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일단 정부부처 의견대로 우선은 의약품 마약류와 관련해서는 식약처에만 특사경 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좀 검토해 보는 방안은 어떻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때요,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노공 저희 법무부 의견도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식약처의 채규한 기획관님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식약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소위에서 소병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식약처 특사경 현황 조사를 저희들이 해 봤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말

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마약류 안전관리체계를 식약처가 컨트롤타워로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어떤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행정조사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부 안에서 처리할 게 있고 그런데 범죄적인 상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식약처에서 전문성과 정보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수사 의뢰를 2000년 이후로 한 300여 건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이 수사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전문성과 정보 접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수사권이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식약처가 이 마약류와의 전쟁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권이 좀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더구나 지금 자체 포렌식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서울하고 경기, 제주 이 정도에 불과하니까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다른 위원님 말씀……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식약처 채규한 기획관님, 여기 제5조에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단속 사무’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 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새로 특사경을 지정하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이 9호에 있는 사람들과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현재 우리 행정조사체계에서는 마약류 수사권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약처가 매년 마약류 제조·유통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도와 공동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중에 범죄적인 수준에서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분석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간이 좀 지체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식약처가 검찰청과 함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이 규정을 언뜻 보면 마약류 부분도…… 여기 마약류 부분은 규정이 안 돼 있네요, 9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마약류와 관련된 부분만 식약처가 별도로 특사경을 지정받아서 수사를 할 수 있게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히는 거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 의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는데 거기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2020년 이후로 한 300건 정도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지휘하에 저희들이 수사를 같이하면 마약류 안전대책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사하고 우리 의원실에 오셨던 식약처의 간부님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요. 누구누구시지요? 지금 배석하셨나요?

조금 나와서 발언하실 수 있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특별수사기획관 김영주** 식약처에 파견 근무 중인 김영주 검사입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김 검사님, 지금 법에 규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사경으로 지명되는 것은 아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특별수사기획관 김영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관할 검사장으로부터 지명을 또 받아야 되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특별수사기획관 김영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지난번에 질의 과정에서 지자체 보건소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인력이 거의 없어서 인력 현황을 달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특별수사기획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그때는 서울하고 부산 정도만 그나마 인력에 여유가 있다는 취지였는데 오늘 자료제출을 보면 경기도도 인원이 꽤 많이 있

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특별수사기획관 김영주** 예, 경기도 1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지금 이렇게 확대를 하자고 하는 취지가, 식약처에 사경권을 부여하자고 하는 게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하자, 아무래도 식약처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걸 전문성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였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특별수사기획관 김영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그러면 지금 식약처의 인원 이, 사경으로 지명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특별수사기획관 김영주** 현재 식약처에서 특사경은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그러면 지금 여기 지자체 현황을 보면 결국은 서울, 부산, 경기 이쪽이 제일 많이 여지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식약처가 지금 서른다섯 분인데 그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약무 두 분, 수의 세 분, 의료기술 네 분, 이렇게 세분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특별수사기획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그런데 반면에 서울의 경우에 보면 약무 네 분, 보건 두 분, 다른 지역들도 보건들이 있고 울산에 약무 한 분 이렇게 지금 죽 업무분장을 나눠 놔더라고요.

처음에 의원실에 와서 설명해 주실 때는 대검과 협의 과정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경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특별수사기획관 김영주** 그런데 현재 법무부의 최종 입장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아니, 법무부의 입장은 제가 물어볼 거예요.

대검에서 할 때는 동의를 했다가 지금 법무부에서 의견이 좀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나한테 설명을 중간에 몇 차례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소상히 기억하고 있어요.

김 검사님, 그렇지 않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특별수사기획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기관 내의 어떤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글쎄, 그 입장은 충분히 이

해가 가요.

지금 문제는 이분들에 대해서 법으로 권한을 확대한다고 해 가지고 사경권이 자동으로 지명이 된다면 말씀하시는 부분들 우려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확대를 하더라도 지명을 하는 단계에서 누구를 몇 명을 할 것인가는 결국은 검찰에서 다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대검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왔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특별수사기획관 김영주 정확
한 사유는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이게 대검에서는 동의를 했다가 법무부에 와 가지고 의견이 바뀐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유상범 위원 의견이 바뀔 수는 있는 것 같고
요.

○소위원장 소병철 아니, 충분히 그렇지요. 그 자체를 타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사경권 확대하는 데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러나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이 무슨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법무부차관 설명하시는 것 들어 보면 충분히 지명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의견 일치가 안 되면 결국은 오늘 또 이 법이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니까 제 의견은 지명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검찰에서 고려를 하도록 하고 장동혁 의원님과 강병원 의원님 법안을 다 통합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정점식 위원 어차피 그것 해도 대안으로 같이
해서……

○소위원장 소병철 그러니까.

○정점식 위원 식약처만 해도 그냥 같이 대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소병철 그런데 두 분의 법안 차이가 거기에서 크게 차이가 있어요. 지자체 공무원들 넣느냐 안 넣느냐. 그래서……

○유상범 위원 지자체 공무원을 꼭 넣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제가 보면, 여기 이 법안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마약류취급자라 그래 가지고 마약류취급자는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 내 마약류취급자, 약사 이렇게 지정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위법성을 찾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게 식약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일반 지자체는 여기에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약류 취급과 관련돼서 본인들이 그동안 행정지도했던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긴급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 지금 이걸 쓰겠다는 거니까,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서 현실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서 실효성을 거두겠다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화장품 이런 거라면 지자체 이런 것을 넣어도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지금 유상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니까요, 조금 이견을……

○정점식 위원 잠깐만요.

차관님, ‘지자체 의약품 분야 특사경 현황’ 이렇게 아까 봤는데 지금은 광역단체만 돼 있던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광역단체에 대해서 추가로 식약처 플러스 광역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지명 안 하면 되잖아요.

○유상범 위원 그렇지.

○법무부차관 이노공 권한을 부여하고 지명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광역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또 넘기자고?

○법무부차관 이노공 아니, 하여튼 신속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이게 특사경 하는 게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임명하는 데?

○정점식 위원 이게 사법……

○권철승 위원 아니, 당사자, 대상자한테.

○정점식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런 자격을……

○권철승 위원 무슨 자격 조건이……

○정점식 위원 일일이 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잘……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그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임명을 하나요?

○정점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든 그게 뭐가 관계 있습니까, 자격 있는 사람인데? 소속이……

○정점식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사법경찰권을

가지기 때문에……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요.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법에 일일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야 가능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소속이 어디에 돼 있든 기본적인 문제는 없는 거지요.

○정점식 위원 거기에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약무, 간호, 이런 전문가도 있고 그냥 일반 행정공무원도 소속, 그 과에 근무하면 지명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자격이나 여러 가지 경력을 봐서 지명할 것 아닙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정점식 위원 예.

○권철승 위원 그러면 문제가 뭐가 있지요?

○소위원장 소병철 위원님들, 그러면 이걸 조금 보류를 해 두고 이따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정점식 위원 그 뒤에 건보공단 것 있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식약처 것 외에 건보공단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 주시면……

지난번에 이걸 전문위원님이 이미 보고하셨던 거지요?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렸고 소위에서 간략하게……

○소위원장 소병철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지난 12월 14일 날 저희가 소위가 있었는데요. 공단이 조사권 등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경찰권 부여를 통해 그 권한을 창설적으로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현행법상 비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는 4건이고 긴급성,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바 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정도로 입법 목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경우 국민과 의료기관 등에 대한 권익침해 측면, 국민 편익 제고 측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전문성 관점에서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로 금융

감독원이 있고 건강보험 재정 부실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공분이 크므로 전문성 있는 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 그때 찬반 의견이 굉장히 나뉘어 가지고, 이것도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소병철 건보공단 측에서 오늘 나오셨나요?

○박용진 위원 건보공단에서 자료 보장해서 설명하겠다고……

○소위원장 소병철 오늘 나오셨으니까 한번 발언 기회를, 왜 지금 사경권을 꼭 공단에 부여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이미 한번 찬반 의견이 갈렸었어요. 그때 건보공단 측에서 설명이 조금, 기회가 아쉬웠습니다. 오늘 준비를 해서 나오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상임이사 이상일 예.

○소위원장 소병철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상임이사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이상일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신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중에 국민 권익침해 측면하고 국민 편익 제고 측면에 관한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거기에 관해서 우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이 3조 4000억에 이르고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저희가 적발한 것만 3조 4000억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적발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까지 합하면 아마 그것보다 더 큰 액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사무장병원의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에만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병원들의 진료 행태로 볼 때 보험사기 등에도 관여가 많이 되고 있어서 민간보험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융감독원 그리고 경찰과 함께 MOU를 맺어서 특사경뿐만 아니라 민간보험 사기에 대응하는 그런 일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권익침해 측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 공단 특사경 활동으로 권익침해될 사안들이 크지 않고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 발생하는 문제고 그 기관 수도, 저희가 그간에 행정조사를 복지부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숫자도 연간 한 250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측면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저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문제는 또 요청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외에도 다른 민간기관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저희 공단의 불법 개설기관 단속에 있어서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소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 개설기관 단속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 경찰수사 연수원하고 MOU를 맺어서 경찰분들에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공유하고 있고, 저희 공단 직원들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또 일반적인 수사 기법에 관한 것들을 연수받는 기회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능력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 공단에 전직 수사관 출신 직원들이 현재 8명 채용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열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수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특사경 권한이 주어진다면 그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해 나갈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알겠습니다.

이사님, 우리 건보공단 사경권 부여하는 이게 지금 건보공단 입장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의 상위 기관이 보건복지부라고 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정경실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보건복지부에서도 사경권 부여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신가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정경실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정경실입니다.

저희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관련 단속을 위해서 특사경이 3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원은 지금 의료제도에 관련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맡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의 한계로 수사를 집중해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하려면 어차피 지금 건보공단에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수사를 하고 하는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급여이사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편익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무장병원이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나 과잉 진료 이런 것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익들을 생각을 할 때 빠른 단속과 수사 이런 것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알겠습니다.

이사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 지난번에 위낙 논의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고 의견이 많이 달라서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위원장 소병철 알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반대 의견 밝히신 분이 그때 박용진……

○박용진 위원 아녜요. 제가요?

○정점식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통과시키지요.

○소위원장 소병철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 국장님께서도 정부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가급적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는 위원님들 중에 지금 이견을 가지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요.

우선 박용진 위원님은 찬성……

○박용진 위원 지난번에도 필요성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다만 반대를 하거나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의 우려 지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해명을 해 주시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님이 필자료를 준비하거나 그러지 않으셔서 약간 좀 실망스럽습니다.

뭐나 하면 특사경이 지금 보건복지부에 셋밖에 없어서, 그리고 사실은 실무적으로 더 잘 알고 있는 건보공단의 직원들에게 특사경을 부여하게 되면 훨씬 더 사무장병원이라든지 위법한 의료기관에 대한 적발 그리고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아

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근거 또 예측,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보여 주실 필요가 있다.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는 실제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요. 국민들도 본인들의 생활 속에서 이것은 좀 이상하다고 하고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도 이것은 상당한 공분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게 법집행, 법의 체계에서 특히나 민간에게 이런 사법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드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감원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검찰과 금감원이 남부지검인가요 거기에 금융 특별부서를, 금융 사건과 관련된 특별부서를 설치해 해서 많은 성과를 낸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설명과 우려를 덜어 낼 만한 자료들이 제출되기를 사실 기대를 했어요. 그게 없이 그냥 지난번하고 똑같은 설명을 하셔서 저로서도 좀 답답합니다. 저는 일단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정 위원님.

○정점식 위원 이상일 이사님 다음번에, 조금 전에 박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사실상 우리가 특사경을 지명을 받으면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가 지금 생각이나는 게 소위 건보공단에서는 이러이러한 점에 착안을 해서 이런 자료를 확인한 후에 이런이런 걸 토대로 해서 그동안 고발을 해 왔다. 그런데 그런 자료, 소위 이런 고발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직접 한다면 이런 점에서는 더 나올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변호사도 있다면서요. 수사 경험이 있는 직원도 있고, 저도 그쪽에서 특채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과 함께 그동안의 고발 사건들을 좀 분석하고 그리고 지난번 소위 심사자료에 보니까 불기소, 고발을 했지만 기소되지 않은 사건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또 검찰에서도 기소하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왜 그렇게 기소가 되지 못했는지를 조금 분석을 해서 가지고 예를 들자면 지난해 자료라도, 23년 또는 22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 방에 가서 설명

을 드리는 그런 절차를 좀 취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상임이사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건보공단 사경권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그 필요성은 인정하시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시니까요.

정경실 국장님 오늘 충분히 직접 들으셨잖아요. 오늘 여기서 확인한 것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요. 건보공단 측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방금 정점식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실에, 우리 박용진 위원님도 똑같은 취지 말씀이시니까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오늘 들으신 대로 자료를 좀 충실하게 만드셔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가급적 우리 국회도 정부 추진하는 사항에 도와 드릴 수 있도록 하려는 마음이에요. 다만 막강한 권한을 주는데다가 또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회의 때까지 위원님들 실에 가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 국장님도 관심 갖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정경실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이사님 들어가십시오.

○정점식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소병철 예.

○정점식 위원 지금 식약처 특사경 지정 문제를 광역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차관님, 추후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법무부차관 이노공 그 부분을 검토해서 만약에 오늘 검토가 끝나면 말씀드리고 만약에 안 되면 추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소병철 알겠습니다.

대검은 처음에 부여하는 데 찬성했던 입장이었는데 이게 법무부에서 그랬기 때문에……

차관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배석한 우리 간부들하고 조금 의논해서, 방금 정점식 위원님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동의를 하면 법안이 통

과되고 아니면 한 번 더 심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지요.

이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해 놓고 이따 마지막까지 대기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보공단은 가서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4항부터 7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보공단 관련 배석자분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강제실종 방지와 관련한 2건의 제정안과 1건의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 심사 때 법무부가 법원행정처와 협의해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그 내용은 8페이지 이하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법무부 수정안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명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있습니다.

1조(목적)입니다.

그리고 2조(기본 이념)입니다.

9페이지의 3조(정의)와 관련해서 제1호 강제실종의 단서에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박영재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강제실종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3조 1호 본문에 있는 내용은 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특별한 이견이 없고, 다만 단서에 나와 있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행위 이 부분을 강제실종 행위자 등의 행위로 본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의견입니다.

국가기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지위를 반국가단체가 갖고 있다는 그런 전제에서 본다고 하면 국가기관 또는 국가라는 본문의 규정, 거기에 예를 들어 괄호를 하고 ‘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 이 정도로 하면 내용이 그냥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새로운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 이런 표현을 하니까, 이건 사실은 국가보안법에 나와 있

는 개념인데요 이 구성원이라는 게 국가의 허가, 지원,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하고 동일한지가 좀 불명확합니다.

그런 취지에서는 저희로서는 반국가단체를 넣는다면 강제실종에서 ‘국가기관 또는 국가’ 그다음에 괄호 해서 ‘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 정도로 하면 내용은 거의 마찬가지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박영재 차장님 설명해 주신 내용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박 차장님 조금 전에 그 표현을 약간 좀 수정해서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는 1호 단서 대신에 본문에 있는 ‘국가기관 또는 국가’ 그다음에 괄호를 하고 ‘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그 뜻이 어느 정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법무부차관님 한번 의견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반국가단체’ 이렇게 했을 때는 또 그게 너무 포괄적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넣은 것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인데 결국은 이 수정안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북한의 특수한 법적 지위 때문에, 결국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시나 구성원들에서의 지원이나 묵인하에 강제실종행위가 있는 것을 처벌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수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고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잠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정점식 위원님.

전문가가 한 말씀 하셔야지요.

○정점식 위원 그런데 여기서 소위 법무부 수정안 단서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성원의 허가, 지원, 묵인하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괄호 안에다가 반국가단체를 포함……

아, 뒤에도 똑같은 지원……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그러니까 구성원이라는 개념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차피 뒤에 개인 또는 집단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정점식 위원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겠네.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그러면 법무부하고 행정처하고 협의하셔서 문안 좀 만들어서……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정리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이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이 국가보안법에만 있는 규정이니까 그 괄호 안에……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국가보안법이라는 표현이……

○정점식 위원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될 겁니다.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조문 정리를 전문위원하고 같이……

○소위원장 소병철 그래서 조문 정리해 가지고 하나 좀……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서 4조(해석의 기준)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서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의 문언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외국 법원의 해석·적용 기준이 국내 법원의 법률 해석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4조(강제실종범죄 관련 적용범위)입니다. 이것은 형법의 적용 범위와 약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5조(다른 법률등과의 관계)는 법무부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여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인데 제10조에 해당하는 강제실종범죄, 강제실종 살해·치사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를 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2항 부분에 제10조 이외의 강제실종범죄의 공소시효는 강제실종행위가 종료한 시점과 강제실종범죄의 피해자의 생존 여부 및 소재가 모두 확

인된 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조 이하에서는 강제실종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강제실종죄입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입니다.

8조는 실종자수수·은닉죄, 9조는 강제실종 상해·치상죄 그다음에 제10조는 강제실종 살해·치사죄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제11조(임산부,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강제실종죄)에 있는데 강제실종범죄가 맞고요. 임산부,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해서 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행정처의 의견을 한번……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결론적으로는 2분의 1가중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사인과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지만 국가에 대한 범죄에서 사회적 약자만 별도로 가중처벌해야 될 필요성을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강제실종범죄 자체의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은 과잉 처벌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강제실종 살해·치사죄의 경우에는 하한이 7년 이상의 징역인데 2분의 1을 가중하면 하한이 10년 6월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과잉 처벌 혹은 양형 재량의 제한 이런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지금 법무부에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추후에 제출하셨는데요.

법무부차관, 같은 의견입니까?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고 또 법원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 있어 저희는 법원의 의견대로 이 조항을 삭제하여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법원행정처 차장님, 아예 삭제……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예, 저희 입장에서는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한석현 18페이지입니다.

제12조에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고 제13조에는 예비, 음모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상급자의 책임등)의 제1항은 강제실종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상급자도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고, 그 2항의 경우에 상급자가 직무태만으로 하급자의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박영재 차장님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국제형사범죄법 15조에 보면 집단살해죄 등에 대한 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제형사범죄법상 법정형이 똑같은 7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사실 집단살해죄에 대한 직무태만범죄와 강제실종죄에 대한 직무태만범죄의 법정형이 같은 것은 균형을 좀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법무부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입법정책적으로 수용하는 의견이신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래서 이 조문을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차관님, 그래서 이 조문을 어떻게 수정하자는 의견입니까?

○법무부차관 이노공 이 역시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지, 삭제가 아니지. 이 조문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는 각 지휘관의 행위에 따라서, 가담 정도에 따라서 7년, 5년으로 구별을 했는데 법원행정처는 이게 7년을 일괄 규정한 것이 좀 중하다 이런 의견을 낸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저희가 7년은 좀 무겁고 5년 이하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유상범 위원 우리가 이 2항에서 규정한 내용이 사실상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조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1항의 내용이 또 2항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7년이 아마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형기준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5년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강제실종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하마스의 인질범 같은, 대표적인 사례 아니에요? 그것이 일반적인 납치·유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반국가세력과 같은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는데 그것을 이와 같이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따라서 낮추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것은 그대로 유지해도 내가 봐서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2항에 대해서 의견 제시한 거지요?

○유상범 위원 2항에 대해서.

○정점식 위원 2항은, 여기 우리 법안에서는 7년으로 돼 있고 강제실종방지협약……

○유상범 위원 그것도 7년으로 돼 있어요.

○정점식 위원 아니, 거기서도 과실로 제1항의 행위에 이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유상범 위원 아니, 그 위에 보면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사람은 7년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규정이 똑같잖아요. 다만 그 과실이나 이런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규정을 했을 뿐이지.

○소위원장 소병철 그러니까.

박영재 차장님, 방금 유상범 위원님 말씀처럼 따로 구분을 하지 않고 전체를 다 7년으로 해 버리는 그 문제점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맞습니다. 그게 무겁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예를 들어서 세분화해 가지고 어떤 것은 7년으로 하고 5년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는데……

○소위원장 소병철 할 수가 없으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전체적으로 다 7년 이하로 하는 것은 좀 무겁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강제실종범죄를 놓고 보면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경우도 사실 아주 우발적인 범죄일 수는 없다고 봐요. 대체로 보면 굉장히 계획되고 사전적인 준비를 다 거쳐서 이루어지는 범죄기 때문에 예비까지 우리가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과실까지 상정을 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 물론 입법의 완결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양형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범 규정을 안 한 것뿐이에요.

○소위원장 소병철 강제실종방지협약에 있는 규정에도 게을리하거나, 이게 일종의 과실범 성격처럼 규정을 했고 우리도 그 조항을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7년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과중하다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 관련 규정 2, 3항을 버무려 가지고 조항을 추가해서 국제법상의 규정과 양형기준을 맞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2항 다음에 3항을 넣고 그다음에 3항을 4항으로 바꾸면 될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제가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조 제1항을 보시면 7년 이하로 법정형이 돼 있는데 그게 상급자가 부하의 집단살해죄 등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집단살해죄는 굉장히 무거운 범죄고 이 제정안 14조 2항에 나와 있는 것은 신체적인 상해가 없어도 상급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은 좀 무겁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유상범 위원님, 그렇지요? 지금 여기 구성요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단살해죄……

○유상범 위원 예,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정점식 위원 그냥 5년 이하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소병철 그러니까요,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점식 위원 차장님, 5년 이하 정도로 하면……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2항은 10조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 나머지 규정은 5년 이하 이렇게 바꾸면 그 우려가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소위원장 소병철 구분을 할 수 있겠어요, 구성요건 표현을?

어때요, 법무부차관?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그렇지요.

그러면 법원행정처 차장님 의견 말씀하신 취지도 반영이 되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법률은 집단살해죄라는 아주 중한 범죄가 있기 때문에 7년으로 해도 충분히 수용이 되는데 우리처럼 게을리한 강제실종범죄까지 해서 7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항을 나눠서 그사이에 이것 마무리할 때까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한석현 다음 20페이지, 형의 감경입니다.

1항은 제10조 강제실종 살해·치사죄와 제13조의 예비·음모죄를 제외한 범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실종범죄 피해자의 생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때에 임의적 감경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2항은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실종 사건의 진상규명에 기여했을 때에 마찬가지로 임의적 형의 감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강제송환 등의 금지로서 법원행정처에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제1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강제실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강제실종행위가 종료한 시점과 강제실종범죄 피해자의 생존 여부 및 소재가 모두 확인된 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양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외국 정부의 재판관할권 면제 배제 조항은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의 김기현 의원안의 제22조(강제실종위원회의 견해) 부분은 삭제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조약기구인 강제실종위원회의 절차에는 증거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국내 법원과 심리 방식도 다르므로 강제실종위원회의 견해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에 준하는 효력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관련 조문을 수정안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정점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좀……

○소위원장 소병철 예,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 차관님, 7조(강제실종죄) 1항에서 강제실종행위자 등은 2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14페이지 법무부 수정안입니다.

통상 우리 형법을 보면 상한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하한의 경우에 2년 이상의 징역, 이것을 내가 유사입법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걸 2년 이상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김기현 의원님 안에 2년 이상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협약상에 이런 게 나오나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협약상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죄의 중한 어떤 그러한 처벌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색하기는 한 데 1년 이상 징역, 2년 이상 징역에 있어서 큰……

○정점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7조 1항은 2년 이상 25년, 7조 2항은 1년 이상 15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의 입법례와 같이 1항의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 2항의 경우에 지금 처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해 보이는데, 범죄의 중요도 등을 따져 볼 때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노공 사실 지난 정부에서 논의했던 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강제실종죄 1항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행위유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2년 이상 그리고 2항은 1년 이상 이렇게 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입법정책적인 문제로서 생각되고 법무부에서 만약에 이걸 3년 이상 이렇게 해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정점식 위원 차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별 의견 없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래서 저는 7조 1항에서의 범정형을 2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변경을 하는 게 기존의 입법례……

○법무부차관 이노공 위원님, 다만 한 가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소병철 예, 법무부차관 말씀하세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이게 지금 현재 강제실종상해·치상죄가 3년 이상 징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약취·유인·치상죄가 현재 형법상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그대로 두십시오.

○법무부차관 이노공 그래서 큰, 그런 어떤 유형별……

○정점식 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전문위원님, 지금 법무부하고 행정처하고 조문도 조금 수정해야 되고 그래서 정리된 조문을 한번 위원님들이 보고 그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정점식 위원 지금 현장에서 조문 정리가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소병철 지금 실무자들이 한다는 것 같은데?

○유상범 위원 가능한가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송오섭 시간이 좀……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게 오늘 회의 마칠 때까지 되느냐 이 취지입니다.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송오섭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하는 데까지 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이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8항, 9항은 조문 정리되면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항도 결부된 내용 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12항, 2건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만 먼저 설명을 하고 부처 의견을 들으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14일, 이 법안에 대해서 출생등록사무의 관장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잠깐 하셨었는데 관장기관을 일단 위원님들께서 법무부로 하는 안을 중심으로 조문 정리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논의를 하였으나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의견을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행정처 차장님, 아직 결론이 안 나온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저희가 지난번에도 사실은 대법원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대법원에서 하겠다는

것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행정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데 적절한 곳에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차후에 얘기를 들어 보니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담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사실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출입국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다만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불법체류자의 아이일 수도 있는 출생등록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만 있다면 법무부가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법무부차관님,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그 부분을 염려해서 몇 군데 조항에 그 정보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취지를 조문에 좀 집어넣었는데요.

방금 행정처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에서 관장하는 것에 대한 염려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업무를 법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과연, 단속 업무를 하는 데서 외국인아동 출생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법무부차관 이노공 출생등록 정보가 불법체류자 단속 등 그 업무에 이용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말씀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 출생등록사무는 인권국에서 소관 담당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규정 형식을 법에 넣기는 어려운 것이 유사입법례나 또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해 봤을 때 이것을 법률에 넣기는 어렵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등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런 우려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제가 그것 관련해서 한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소병철 예,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그래서 만약 법무부 소관 부처가 정해지면 법무부에서 이 정부안을 한번 만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물론 의원입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법무부가 관장기관인 걸 전제로 해서 법무부의 입장을 만들어 주시면, 제정안으로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출생통보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출생통보제는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법 내용을 보시면 출생통보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을 통해서 대법원이 운용하는 그 시스템으로 시읍면의 장에게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게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법 규정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 제정법이 시행되든 되지 않든 병원에서 출생하는 애들은 전부 다 출생통보제에 의해서 통보가 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통보는 일단 대법원 시스템에 의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시읍면의 장에게 오게 돼 있는데 이걸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누가 나누어야 할 것이냐, 만약 법무부가 관장기관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법무부 직제 개정안에 보면, 방금 차관께서 설명하신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등록사무가 인권국 업무로 추가된 개정안을 받았는데요. 이제 이 법이 통과 되면 직제를 이렇게 지금 개정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방금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생등록사무 관장기관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의견이 일치된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 염려에 대해서는 직제 개정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의원입법을 만들 때 법무부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심사 과정에서 법원에서 염려하시는 의견들을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더, 그리고 지금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른 업무 협의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번 1소위 때까지 법무부에서 법원행정처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직제 부분은 이미 여기에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좀 보셔 가지고 출생통보제 협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다음번 회의 때까지 이 부분을 마무리를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법무부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하고도 미리 사전에 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차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사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업무를 인구 소멸 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아동의 경우에는 인권적인 측면까지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21대 국회에서 지금 또 여러 차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속도를 내서 양 기관의 의견이 합치가 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 회의 때까지 법무부도 좀 수고스럽지만 속도를 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소위원장 소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1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3, 제14, 2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보시면, 이 법안들은 피고인이 국외 도피 시 공소시효 완성 간주를 위한 기간을 정지시키는 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쪽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안과 서영교 의원안 공히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표현상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한 정부안과 같이 그 기간이 정지되는 것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입법취지상 맞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칙에서 보시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두 안이 동일하고 그 다음 6쪽을 보시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를 2개의 안 모두 두고 있는데 지금 기간이 정지되는 것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범죄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2개 안 동일합니다.

다만 정부안에서는 범인이,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기간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 기간은 제외하고 정지된 것으로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보

기에는 정부안과 같이 범인이 외국에 도피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기간을 정지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수고하셨습니다.

각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노공 현행법상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그 기간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공백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 완성 간주 기간, 즉 재판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하여서 처벌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정부안대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문구 수정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수석전문위원의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요. 법무부차관께 한번 좀 물어볼게요.

지금 정부안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 기간이 정지된다’ 이렇게 돼 있고 서영교 의원안에도 같은 취지인데 우리 수정의견에서는 ‘기간은 진행이 정지된다’, 이게 얼핏 보면…… 지금 큰 차이가 뭐가 있는 겁니까, 이게?

○법무부차관 이노공 서영교 의원안에 따를 경우에는 이 개정안 시행 전의 국외 도피 기간에도 재판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석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판시효가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정부안입니다. 정부안대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행정처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수석전문위원의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자, 위원님들.

○유상범 위원 정부안대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정부안대로 하고 수석전문위원 그쪽의 자구 수정.

○소위원장 소병철 예, 전문위원님이 자구 수정

하시는 걸로.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면, 15항이 있습니다마는 16항 형사소송법을 먼저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16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16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의 집행을 위해서 임의조사를 하거나 강제조사를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형집행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형집행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소재를 파악·확인하기 위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유형 집행 관련 조항과 벌금형 집행을 위한 임의조사 및 강제조사 규정 이렇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형 집행을 위한 임의조사 및 강제조사의 경우에는 일부 준용하는 조항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조문 정리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벌금형 집행에 관련된 자료 9쪽을 보시면 벌금형 집행을 위한 임의조사 및 강제조사 규정의 내용으로서 재산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이 지난번 소위에서도 벌금형의 경우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 제도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압수수색하는 조항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기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지난 소위에서 법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셨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실 엄정한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도입이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만 지난번 우려의 말씀을 여러 분이 주셔서 저희가 대안을 좀, 법원의 문제점이나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한 대안을 지금 마련하였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배포를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안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법원 의견을 먼저 들으

시고……

○소위원장 소병철 맞습니다.

행정처 차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저희는 지난번 말씀드린 데에서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자료를 배포해 주시지요.

자료를 볼 동안에 법무부차관께 좀 물어볼게요.

지금 자유형 미집행자가 대폭 증가했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그 가장 큰 원인으로 불구속 재판이 시작되면서 대폭 늘어난 거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 보시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제가 현재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많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그렇지요.

차장님, 제가 지금 여기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형 집행이 잘 안 되고 자유형 미집행자들이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한 분석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법원에서 재판할 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고 바로 거기서 선고 즉시 구금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형 집행을 집행기관에서 굉장한 애로를 겪고 그것이 통계 숫자가 대폭 늘어난 원인이라는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지금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은 심사자료 6쪽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숫자가 거의 1000건보다는 훨씬 넘고 한 2000~3000건에 육박하는 그런 정도, 매년 그렇다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소병철 여기에 이건 통계만 나와 있고요. 왜 이게 대폭 증가됐는가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유형 미집행자가 대부분 다 공판 단계에서 영장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했을 때 법원에서 소재탐지 조사도, 소재탐지 촉탁도 했다가 그게 안 되면 영장을 발부하는데요. 그 영장이 미집행되면 결국은 공시송달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행을 선고하게 되면 결국은 자유형 미집행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로서는 좀 안타까운 게 재판, 공판 단계에서 소재불명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원활하게 되면 실형 선고 이후에 미집행자가 되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줄 것이다. 그런 면에 대해서 수사기관 혹은 또 경찰 측에서 공판 단계의 피고인 출석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차장님, 근래에 제가 봤던 자료에 보면 이게 오랫동안 그랬던 게 아니라 수년 전에 법원에서 실시한 제도 때문에 급격히 늘어났다,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었어요.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저는 그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추측건대 그게 아마 예전에 저희 재판예규 중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이 원칙이라는 재판예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그게 변경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법정구속이 원칙이 아닌 것으로, 원칙이라는 그 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바뀐 다음에 그런 일이 늘어났다는 내용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았는데 차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예규가 바뀐 후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지금 나타난 현상상으로는 예규 바뀐 뒤로 자유형 미집행자들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법이 자유형 미집행자들이 대폭 증가한 데 대해서 분명히 국가의 형벌권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공교롭게 재판예규 바뀐 뒤로 대폭 증가를 했기 때문에 방금 차장님께서 수사기관에서…… 재판의 실효성 있는 건의말씀을 하셨는데요. 예규를 바꾸는 것은 좀 어려울까요?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사실은 지금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통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 예규 바뀐 다음에 법정구속 비율이 눈에 띄게 줄지는 않았다는 그런 분석을 했다는 내용을 제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예, 제가 본 자료에는 예규가 바뀐 뒤로 자유형 미집행자가 대폭 증가했다. 물론 그것은 제가 검찰 자료를 봤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지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법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우리 의원실들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유형 미집행자가 늘어나게 된 것은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사람이 불출석했을 때 영장 집행이 되지 않는 그게 주된 내용이라고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법원에서 분석하신 거하고 검찰에서 분석된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 부분은 법원에서도, 저는 검찰 자료만 봤기 때문에 법원 자료도 한번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예, 그것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이것 대안을 법무부차관께서 위원님들께……

○법무부차관 이노공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공사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근거 규정은 유지하였지만 개정안의 원안에서 임의 제출물 압수, 제218조 그리고 제삼자의 출석요구, 제221조 제1항 전단 준용 규정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소재불명인 경우에 한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에 대한 준용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벌금형의 집행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자유형 집행의 경우에만 이 조항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위원님들 말씀……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 지난번의 논의 과정에서 결국 법원에서는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서 마련된 압수수색 제도를 형 집행에 이렇게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그때 해외에서도 이런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습니까?

○법무부차관 이노공 우리하고 법제가 가장 유사한 일본에서는 작년 11월에 자유형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제도를 도입하였고요. 독일과 프랑스는 형사소송법상 자유형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도주자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사용, 자금 이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강제수단을 활용하고 있고 도주자 추적을 위한 수색

영장 발부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정점식 위원 해외 유사 사례 등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면 결국은 수사를 위해서도 압수수색을 하는데 법원의 재판 결과를 집행하기 위한, 형의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당연히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법원에서 이걸 별건수사의 단서로 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도 없는데 무슨 별건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염려는 좀 과도한 염려라고 생각을 해서 법무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벌금형에 대해서는 우선 보류를 하더라도 자유형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저는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위원님들……

오늘 수정안이 지난번보다는 진일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법원행정처에서도 염려를 제기했고 저도 그런 염려를 제기했고 법무부에서도 그런 염려를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주셨는데요. 앞서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자유형 미집행의 정말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유형 미집행자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도입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법원행정처가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자료를 조금 만들어서 의원실에 주시면 보고 다음번에 또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소병철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그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형 미집행의 증가 원인을 판단해 보자고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타당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법원의 재판 관행 또 검찰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을 때 검거하는 노력, 그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사실은 이미 확정된 형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의 논의인데 지금 그 앞의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그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결국은 우리가 자유형을 선고하고, 형이 선고

됐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2000여 명의 범죄자들이 사실은 검거되지 않은 상태로 대한민국이든 외국이든 확보하고 있다는 이 현실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형 미집자의 검거를 위한 어떤 기본적인 근거 규정은 만들어 줘야지 그 효력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의견을 정리하는 것은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안으로 저희가 통과시켜도 문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계를 한번 보면 자유형 미집행이 지금 대폭 늘어난 데 대해서 형벌 집행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정부에서는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를 보시면 재판예규가 바뀐 뒤로 급격히 자유형 미집행자가 늘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아무리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압수수색영장의 근본적인 어떤 영역 확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속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제가 잠깐 말씀 드리면 자유형 미집자 집행이, 주거지의 압수수색 이런 것이 언제 되냐면 사람을 검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 소재 파악을 위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하는 것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범죄수사를 위한 압수수색과는 완전히 형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차관님, 자유형 미집자 검거를 위해서 필요한 영장청구하는 게 있지요, 지금도?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형태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그것이 새로운 범죄의 단서로 쓰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걱정이, 사실 그것은 굉장히 타당한 걱정이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니까 실제로 자유형 미집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때 어떠한 형식으로 받는지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조금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마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 위원**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도 받아 봐야 되겠고 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도 사실은 지금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게 도주하고 피해 버리면, 법원의 최종형 집행 자체가 무력화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경찰이든 검찰에서든 하여간 형을 집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것이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압수수색이 더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더 강력한 조치라는 것 말고 어떤 무기력할 수밖에 없거나 혹은 이렇게 자유형과 관련돼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되는 자료나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양쪽 다 고민스럽습니다만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서 이 사안을 보고 있거든요.

○**소위원장 소병철** 그러니까 박용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좀 더 정리를 해 드리면, 지금 구성요건과 법조문에 보면 ‘필요한 때 그 소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검증까지 할 수 있도록 조문이 돼 있기 때문에 범죄자는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자기 주거에 압수수색, 검증까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형 집행자의 소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제삼자의 집을 압수수색한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그 취지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제가 법률가 입장에서 정리를 해서 드린 거고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자료 2쪽부터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제정법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부터 간략히 보고드리면, 읍면 지역 등에서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상속된 부동산 및 미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보증인의 보증서와 대장관리청의 확인서를 첨부한 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는 내용입니다.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갖는 한시법입니다.

검토보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특별조치법은 4차에 걸쳐서 시행된 바 있습니다. 4차 법안과 지금 제정안을 비교하는 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정안은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시간적 범위를 4차 법에서 정한 ‘1995년 6월 30일 이전 양도·상속된 부동산’에서 ‘2012년 6월 30일 이전 양도·상속된 부동산’으로 그리고 지역보증인의 거주기간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그리고 보증인의 보수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보수’에서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보수’ 이렇게 세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해 보면, 서류의 멸실이나 증인의 사망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진정한 권리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해 보증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조치가 이미 4차에 걸쳐 반복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반복하는 것은 등기권리자와 의무자의 공동신청과 형식적 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의 존재 의의와 법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청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보증인의 주장에 의존하여 등기를 허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민형사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수고하셨습니다.

기관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법원행정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그동안 네 차례 시행이 되었고요. 특별조치법이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되면서 입법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 제도와 물권법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사실 특별조치법의 시행은 자제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4차 특별조치법 기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었다는 점은 저희도 고려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특별조치법의 목적은 지금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게 저희 법원행정처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그러면 차장님, 지금 조금 제한을 해서 하는 의견이면 구체적으로 한번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만약 이 법안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4차 특별조치법의 내용과 같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못 했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차 특별조치법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요, 이번 특별조치법은 그보다 한참 뒤인 2012년 6월 30일까지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까지 늘리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못 했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 예전에 9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시기가 95년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까지는 명의신탁이나 아니면 실제 관계와 다른 등기가 이루어졌던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간을 그렇게 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간을 95년 6월 30일 이전이라고 하는 4차 특조법의 기간과 같게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알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의견 있으십니까?

○법무부차관 이노공 기본적으로 수석전문위원과 법원행정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희의 의견도 만약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4차 특별조치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특히 보증인 자격이나 보증인 보수 부분도 4차

특별조치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위원님들 말씀……

○정점식 위원 사실은 2020년 4차 특조법을 시행할 때도 법사위 내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해 주면 안 된다, 이미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돼 가는데 이 법을 지금 또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고 그러고 나서 4차 법을 제정할 때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과징금 면제 조항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1995년 이전에 이렇게 내가 상속받았다, 매입을 했다고 주장을 해서 이 조항으로 이렇게 등기를, 이 기간 동안에 등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법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전처럼 과징금 면제가 될 줄 알고 특조법을 이용해서 등기를 했다가 후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례인데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공시가격이 굉장히 싸니까. 그런데 사실은 과징금이 토지 가격보다 더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법의 실효성이 지금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실제로 지역에서 이 법을 주로 이야기하는 게 법무사들입니다. 법무사들이 이 법 이렇게 제대로 하지를 못했으니까 이 법을 다시 한번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차장님께서도 기본적으로는 2년 만에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입장인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저희는 특조법 자체가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입장입니다.

○정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 기본적으로는 반대 입장이나 의견을 동일하게 한다면 아주 제한된 기간에서 연장할 수는 있다 이런……

○소위원장 소병철 차장님 말씀처럼 코로나 기간 동안 아주 특수 상황에 보증인이라든지 또는 현지조사 이런 게 올 스톱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권리 행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특조법을 그 기간에만 적용하자 이 취지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등기업무는 법원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그 외에도 우리 법원행정처에 조금 다른 의견들, 범위를 축소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등기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석전문위원님하고 해서 조문에 대한 수정안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법원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예, 수석전문위원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그러면 15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아까 강제실종법에 대해서 조문 정리가 됐나요?

○**법무부인권국장 승재현** 지금 프린트해서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예.

그다음 법들이 전부 각급 법원 법이라서 오늘 논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회생법원은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점식 위원** 차장님, 회생법원……

○**유상범 위원** 회생법원은 좀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소병철** 그럴까요?

○**정점식 위원** 예.

○**소위원장 소병철** 좋습니다.

○**정점식 위원** 회생법원부터 하시지요.

○**소위원장 소병철** 그러면 30항, 31항……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지금 회생법원 설치 법안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회생법원 중복관할 인정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도 있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면제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도 나와 있고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채무자회생법 32안 정부안은 지금 바로 논의하시는……

○**유상범 위원** 32항부터?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32항 그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부터 하시지요.

○**소위원장 소병철** 안건 제27항부터 31항까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권철승 위원** 위원장님, 앞의 건 안 하시나요?

○**소위원장 소병철** 할 겁니다.

○**정점식 위원** 화성시법원 오늘 결론 못 내립니다.

○**권철승 위원** 아니, 결론을 내야지요. 지금 화성시가 지난달에 100만 명 넘었어요.

○**소위원장 소병철** 그러면 알겠습니다. 권철승 위원님 그것까지 넣어 가지고 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촉급하니까……

○**정점식 위원** 회생법원 설치 법안은 빼고 지금 우선은 급한, 신설된 회생법원의 중복관할 인정해 주는 그게 30·31항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예, 그런데 30·31항은 설치 법안하고 같이 연계돼 있고요. 32항이 정부안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그렇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33개 법 중에서 정 간사님하고 좀 압축을 한 건데 이것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논란이 있으니까 이걸 다음번 법사위 전체회의 전에 1소위를 한 번 더 열도록 하고 그때 한꺼번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 오늘 논의를 하면 시간이 상당히 지체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제실종자 부분에 대해서만, 거기까지 논의를 하고 오늘 산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32항은 이견이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32항 간단한 내용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건 정리해 주시지요. 정부에서, 양쪽 기관에서 하는 건데.

○**정점식 위원** 하나만 하시지요.

○**소위원장 소병철** 권철승 위원님.

○**권철승 위원** 제가 지금 집중을 못 해서 못 들었는데……

○**소위원장 소병철** 법원 설치에 대한 것은 다음번 소위 때 한꺼번에 논의하도록 하고 지금 관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 달라는 정부측과 법원행정처 의견입니다.

○**권철승 위원** 그건 좋은데요. 법원 설치 관련되는 법을 다음에 꼭 최상단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해 주시지요.

○**정점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차장님, 누차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법원을 설치하는 부분, 지방법원의 성격 이런 부분들은

정부 측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사실 법무부하고는 협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기재부하고는 협의가 안 됩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긴급 상황에서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선은 법사위원으로 계시는 권철승 위원님의, 화성시법원 설치 문제 거기에 관해서 좀 다음번에 집중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권철승 위원** 아니, 집중적이 최상단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이것 지금 몇 번째 올라오고 계속……

○**소위원장 소병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철승 위원** 그런데 진짜 제가 지역구 문제를 갖고 자꾸 이야기하기가 모양새가 안 좋아서 공식적으로 좀 덜하는 편인데요. 지금 인구가 100만 명 넘는 도시 중에 시법원도 없는 도시가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한번 나와 보라니까요.

○**정점식 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방법원 형태로 할 것이냐 지원 형태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소위원장 소병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법원 설치를 다음번에 심사 순서 첫 번째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지금 정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요청하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관할 조정만 하는 걸로 그렇게……

○**유상범 위원**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

○**정점식 위원** 관할 조정 아니고 32항 관련이랍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

권철승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권철승 위원** 다수에 따르는데 최상단에서 논의해 주실 것까지 좀 약속을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소병철** 예.

그리고 부가해서, 지금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가 상당히 의견 접근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재정 당국에서는 법원·검찰청 설치에 대해서 옛날에 저도 1과장 때 해 보면 급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접촉해 보셔서 안 되면 우리 법사위에서 결정하면 또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재정 당국 입장을 고려해서 법을 통과하되 기간을 좀 두고 그렇게 하면, 과거에도 차장님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그렇게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지금 33개 법안 중에, 최대한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일치시킬 시켜서 가지고 다음번에 논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권철승 위원님, 각급 법원 법은 다음번에 최우선순위로 그렇게 하고 오늘 지금 법원에서 요청하시는 부분만 한정적으로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권철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 정비입니다.

지방세법 제26조 개정에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체계의 정합성 제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에 제출 서류 간소화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법원이 행정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채무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규정 보완입니다.

채무자 회생 규칙 제9조에 규정된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에 관한 내용을 법률 제23조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의 촉탁 규정 보완입니다.

먼저 표를 봐 주시면, 법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해서 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이 있을 경우에 법

원사무관 등이 등기를 촉탁해야 되는 시점을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에 ‘등기된 것이 있는 때’에서—이게 현행법입니다—‘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 촉탁 시점을 등기가 있는 것을 안 때로 수정하는 것은 현행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파산 선고 시 등기 촉탁 시점과 동일한 형식으로 규정하려는 것인데 다만 개정안의 등기 촉탁 시점보다 현행법상의 등기 촉탁 시점인 ‘등기된 것이 있는 때’가 빠른 시점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신속한 등기 촉탁을 통해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채무자와 거래하는 제3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에 있는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표입니다.

현행법 제24조제3항 전단과 후단의 내용을 각각 같은 항 제1호, 2호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제2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현행법 제24조제3항 후단 내용은 같은 항 전단에서 규정한 법인이 아닌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 제24조제3항제2호를 ‘법인이 아닌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파산채단에 속하는 권리’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법원행정처는 전문위원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법무부차관계서도……

○**법무부차관 이노공** 저희도 전문위원 일부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동시에 개정 추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합성 체계상 신속히 검토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한석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준용 규정의 범위를 이사 등의 재산까지 확대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채무자 회생 규칙 제10조제2항 내용을 법률에 상항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미 해당 일자가 경과했으므로 법안 심사기간 등을 감안해서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시행일은 말씀하신 대로 이미 2024년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공포 후 1개월’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 안 되나?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즉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589조 제3항 및 4항의 개정 규정은 2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이 부분도 부칙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이 부분은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촉탁에 관한 것인데 시스템 마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24년 1월 1일 이후 2년의 기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조항도……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공포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래요,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지요.

○**소위원장 소병철** 전문위원님 나중에 차구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문위원 한석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그러면 출력해 오는 문안 오기 전에 아까 보류해 났던 사법경찰관 식약처 관련 법안은 계속 심사를 할지 아니면 법무부에서 좀 유연하게 입장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차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문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다음 기회에 하세요.

○**소위원장 소병철** 예, 다음 기회에 하고 지금

강제실종자법만……

○정점식 위원 32항부터 의결하시지요.

○소위원장 소병철 그러시지요.

32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어차피 우리가 1소위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금방 출력이 되면 오늘 의결하고 아니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저희는 지금 받았습다.

○소위원장 소병철 받으셨어요?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예.

○정점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소병철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수정안 제13조제2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제10조의 죄를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법조문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유상범 위원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법무부차관 이노공 정합성·체계성을 잘 맞추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알겠어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이 조문은 이대로인데 조문 체계 정리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일임하도록 하고, 아까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제10조의 경우에 7년으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조항들, 앞의 반국가단체 단서 부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정점식 위원님 한번 봐 주시지요.

○정점식 위원 예, 그대로 괜찮겠습니다.

의결하고 그사이에 전체회의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전에 지적한 그 부분은 호를 나누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 정리를 좀 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항을 나누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소병철 전문위원님이 부칙 관련해서

하나 말씀하실 것……

전문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전문위원 한석현 강제실종범죄처벌법의 시행일이 공포한 날부터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계되어 있는 법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공포한 날’로 2개 같이 가면 되지요?

○전문위원 한석현 그리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 조문에서도 조문이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저희가 시간에 촉급해서 조문 내용은 맞는데 배치는 전문위원께 일임했으니까 전체회의 전에 정리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항에 대해서 연결 법이라서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한석현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이미 말씀하셨지요?

○유상범 위원 부칙을 통일시키는 게……

○소위원장 소병철 그러면 10항에 대해서도 의결하면 되는 거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10항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항은 수정한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들이 그 부분의 수정안을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소위원장 소병철 부칙?

○유상범 위원 예, 부칙 관련해서.

○소위원장 소병철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위원이 수정안을 말하는 게 맞지요.

10항 법률도 관련 법에 따라서 부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예, 부칙은 앞서 전문위원님이 보고해 주신 대로 위원님들 이견 없으신 결로 하고 제10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권 칠 승	박 용 진	박 주 민	소 병 철
유 상 범	이 탄 희	장 동 혁	정 점 식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정 성 희
전 문 위 원	한 석 현
전 문 위 원	박 동 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 관	이 노 공		
인 권 국 장	승 재 현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정 경 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 획 조 정 관	우 영 택		
마약안전기획관	채 규 한		
특별수사기획관	김 영 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상 일		
급여상임이사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 장	박 영 재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송 오 섭		

○출석 진술인

이경아(법무법인 지엘 변호사)
 이광우(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이동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경애(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